

■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 의2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9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 기관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2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심사	➔	결정	➔	지정서 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

신청인 처리기관: 산업통상부